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4
1.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전부개정안의 구성	5
3. 전부개정안 전반에 관한 검토	6
4. 제21대국회에서의 논의	8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9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1
1. 제명 및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1
2.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	13
3.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안 제7조 및 제8조)	16
4. 의사면허 부여 및 의무복무(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19

I. 개요

1.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9.
- (3) 회 부 일 : 2024. 7. 10.

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라남도 내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 지원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안 제1조)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보건복지부장

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 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 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으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야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함.

2)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Ⅱ. 총괄적 검토

1.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최근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시·도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전부개정안의 구성

□ 개정안은 장·절의 구분없이 본칙 1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0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2조(정의)	제11조(의무복무 기관 등의 지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제4조(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교육협력기관)
제5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등)	제14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6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운영)	제15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7조(학비 등의 지원)	제16조(지도·감독)
제8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의사면허의 부여 등)	제18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3. 전부개정안 전반에 관한 검토

□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 또는 설치하고, 국가가 학비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하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 재학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¹⁾하는 사업으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하였으나,

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지·오지·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지원자가 감소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80년)으로 공중보건 의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다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다시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시범사업의 결과 의대 및 의전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목표 인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지원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 간호대생을 포함하면서 전체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및 지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목표 인원 (예산 편성)	신청 인원	실제 지원 인원		
				총 지원	계속 지원	신규 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2019	20	8	8	-	8
	2020	20	12	12	6	6
	2021	20	12	12	9	3
	2022	20	10	10	8	2
	2023	20	10	10	8	2
간호대학	2021	20	127	31	-	31
	2022	40	172	66	27	39
	2023	70	194	80	51	29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하여도 의대생, 의전원생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참고로, 동 전부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유사한 취지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의안번호 제2201301호, 박희승의원 대표발의(2024. 7. 2.)

4. 제21대국회에서 논의

□ 제21대 국회에서는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개정안이 6건 발의되었는데 대학의 설립형태(법인으로 설립, 국가기관으로 설립 또는 국립대학 내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등),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법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중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3.12.20.)에서 의결하였으나, 법사위 회부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내역 >

의안번호	법률명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자)
210019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용호의원 (‘20.06.05.)
210069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	서동용의원 (‘20.06.19.)
21007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기동민의원 (‘20.06.19.)
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김성주의원 (‘20.06.30.)
21090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김형동의원 (‘21.03.23.)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강은미의원 (‘23.07.27.)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과 개정안은 취지(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는 유사하나, 전부개정 시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폐지되고 간호대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공공의대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 전국에 최소 17개 이상의 공공의대가 생기게 되므로,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의대가 없는 일부 시도의 경우 공공의대 지정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속병원 설립의 타당성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의 실효성 부족, 교육의 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다양한 쟁점이 있고, 개정시 의무복무기간이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제도 수용성,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육부) 국립대병원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필요성, 재정 여건,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부속병원 설립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의사 관련 단체) 2~5년간 의무복무하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자가 적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함.

또한, 부속병원 없이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하면 부실 교육으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며,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더라도 인근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 부속병원 신설 시 원활한 환자 유입 및 운영 담보하기 어렵고,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지역의료체계 불균형 심화로 신설 병원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정부의 병상수급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음

□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법」에서는 종별 의료인에 대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포함하여 종별 의료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서도 모든 종별 의료가 공공 보건의료의 참여 및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한 의과대학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의사면허를 ‘의사면허(한 의사면허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의사, 한 의사 등의 종별 의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한간 호 협회)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간호 분야 의료취약 공백 문제 해결에 기여 중이나, 개정안은 의대생만 포함하고 간호대생은 배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적극 반대하며, 간호대생에 대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명 및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동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인용하여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医료를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인력”이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현행법과 유사하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안 제2조제3호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의과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②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③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의과대학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간호대학 학생³⁾은 제외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및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제5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도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기준, 지정 요건, 학생정원,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운영)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경우 현재는 교육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지도·감독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을 공공의과대학으로 지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권에 근거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지역별 의과대학 현황
-------------	--------------------

연번	지역	설립형태	학교명
1	서울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2		사립	경희대학교
3		사립	연세대학교
4		사립	한양대학교
5		사립	고려대학교
6		사립	가톨릭대학교
7		사립	중앙대학교
8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9	인천	사립	인하대학교
10		사립	가천대학교
11	경기	사립	성균관대학교
12		사립	아주대학교
13	강원	사립	연세대학교(원주)
14		사립	한림대학교
15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16	대전	국립	충남대학교
17		사립	건양대학교
18		사립	을지대학교
19	충남	사립	순천향대학교
20		사립	단국대학교
21	충북	국립	충북대학교
22	광주	국립	전남대학교
23		사립	조선대학교
24	전북	국립	전북대학교
25		사립	원광대학교
26	대구	국립	경북대학교
27		사립	계명대학교
28	경북	사립	영남대학교
29		사립	동국대학교(경주)
30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31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32		사립	고신대학교
33		사립	동아대학교
34	울산	사립	울산대학교
35	경남	국립	경상국립대학교
36		사립	인제대학교
37	제주	국립	제주대학교

3.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 및 안 8조는 학비등의 지원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한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을 반환하도록 하였음.

제7조(학비등의 지원) 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비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학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은 학비지원 및 반환규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임.

- 참고로, 졸업 후 특정 분야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등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경찰대학(경찰공무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농어업 분야 종사)의 경우가 있으며, 이들 사례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경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한국 농수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제1항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상관없이 지원받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료행위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학비등의 일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는 학비등 지원이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경우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퇴학을 예시로 열거하는 것에 추가하여 자퇴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4. 의사면허 부여 및 의무복무(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안 제9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에 대한 10년 의무복무이행 조건부 의사면허 부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기간 등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제9조(의사면허의 부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9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무장교로 복무한 기간은 제9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⁴⁾

에 따른 역학조사관,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 동안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0년 의무복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되,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국가가 특정분야 종사 인력양성을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사관학교(4년제)는 10년, 경찰대학(4년제)은 6년, 한국농수산대학(3년제)은 학비 지원기간의 2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경우 장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병역복무기간이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포함되고, 한국농수산대학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복무기간 현황 >

구분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육/해/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 양성	육군 장교 양성	군 간호장교 양성	경찰간부 양성	농어업인력 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 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 학사학위	학사학위 (법학/행정학)	전문 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의무복무 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 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제6조제2·3항 및 제7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등 ⁵⁾	시행령 제12조제2항 ⁶⁾

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

-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10년)을 학비지원기간(수업연한 6년) 기준 1.7배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겠음.

문 의 처

02)6788-5509

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